

EU의 환경정보공유제도

I. 서언

2008년 1월 23일 EU 집행위원회는 유럽의 “환경정보공유제도(Shared Environmental Information System, SEIS)”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EU회원국들에게 통보¹⁾하였다. 이 통보는 환경정보공유제도(SEIS)를 위한 목적, 원칙, 장점 그리고 환경정보공유제도 확립을 위한 제반요건과 노력 등에 관하여 기술하고 있으며, EU는 이에 기초하여 2013년까지 환경정보공유제도를 완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오늘날 지구가 처해 있는 다양한 환경적 위험 요소들은 효율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고, 동시에 첨단정보기술의 발달은 이에 대한 기존의 한계들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끊임없이 제공하고 있다. 이 두 양상의 결합은 환경정보공유제도의 존재이유이자 성공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다. 즉 ① 환경정보공유 제도는 ‘환경정책’의 설계와 수행을 위한 환경

정보에 대한 접근, 공유, 상호운용 그리고 공동이용을 통해 많은 다양한 환경적 위험요소들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가능하게 하고, 또한 ② 환경에 관한 정보와 자료에 대한 수집, 교환, 활용 과정을 현대화하고 간소화시키는 방향으로 발전시킴으로써 환경정책과 환경적 조치의 준비와 시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다음에서는 EU의 2차 입법형태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연성법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이러한 EU집행위원회의 통보, 그리고 최근까지의 관련 입법 활동들을 중심으로 하여 구축되고 있는 EU의 환경정보공유제도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II. 환경정보공유제도의 도입 배경

21세기 초의 EU 환경정책은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지속된 제6차 환경행동계획

1)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Council, the European Parliament,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of 23 January 2008 entitled “Towards a Shared Environmental Information System (SEIS)”. COM(2008) 46 final(OJ 2008 C 118).



(The Sixth Environment Action Programme, 6EAP)²⁾에 의해 진행되었다. 제6차 환경행동계획은 환경정책의 효과적인 정책 및 실행, 그리고 시민의 폭넓은 권한확보를 위해서 환경상태 뿐만 아니라, 환경변화 추세, 환경개선을 위한 압박과 행동 추진에 대한 정보들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함을 공식화하였다. ‘환경’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환경정보는 널리 공유되어 사용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유럽은 오랜 동안 환경정보를 공유해 왔고, 그동안의 환경정보체계는 ① ‘회원국들’이 환경법안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기여하였고, 최근에는 ② ‘EU와 회원국들’에 의해 다양한 환경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기여하였다.

그런데 오늘날 제6차 환경행동계획이 선택한 우선해결 과제들, 특히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생물다양성 감소의 중지, 천연자원의 관리에 직면해서는 환경정보의 효율적 이용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최근의 산불, 홍수, 가뭄 등은 정확한 환경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하여 공유하는 동시에 이를 손쉽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러한 환경적 도전 또는 환경적 재해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속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제6차 환경행동계획하에서 기존의 관련 환경정보체계는 ① 수집된 환경정보의 ‘공유’와 ‘이용’의 측면에서 개편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② 그 개편의 방향은 ‘통합성’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즉 계속되는 정보기술(IT)산업발전으로 인한 실시간 자료제공과 기술적 조건들 - 예컨대, 정보체계 형식과 상호운용과 기술적 조건들 - 이 충족되면서, 신속한 환경정책 결정을 위한 통합된 분석결과들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정보체계로의 개편이 필요하게 되었다.³⁾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의 환경에는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하지만 또한 새로운 기회도 존재한다. 특히 기술의 발전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관련 조치들이 신속하게 취해질 수 있도록 기여하여 어떤 경우에는 인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 데이터 형식에 관한 상호운용 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 그러한 데이터들은 ‘통합적 분석결과’를 제공하여 바람직한 정책들의 이행에 근거가 된다.

III. 환경정보공유제도의 목적

이러한 EU집행위원회의 통보는 도입부분

2) 제6차 환경행동계획(2002~2012년)은 유럽공동체 환경정책의 기본근간을 이루고 있는 핵심 환경정책이다. 유럽은 환경 분야에 있어 우선 해결과제를 선정해 집중 노력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 행동 프로그램도 우선 지속가능한 개발 전략과 함께 4개 우선 과제, 기후 변화, 자연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인체 보건 및 삶의 질, 천연자원 및 폐기물을 선택하여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3) COM(2008) 46 final, p.3.

(Introduction)에서 본 통보의 목적이 EU의 환경정책의 수립과 실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수집, 교환 및 사용을 현대화하고 단순화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 방법에 따른 보고체계의 변화, 즉 현재 중앙집중적 보고체계에서 자료접근, 공유 그리고 상호운용에 기반을 둔 체계들로의 점진적 변화 현상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그 목적은 개선된 규정을 통해 연관부서의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환경정책을 위해 필요한 정보의 질과 유용성을 유지 및 향상시켜 더 나은 규제방안을 도모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⁴⁾

이와 같은 방법론적 · 체계적 변화의 핵심 내용은 ‘환경관련 정책 또는 입법 절차’에 필요한 정보사용에 대한 정보 활용체계의 현대화이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예상되는 2003년에 이미 한 번 개정된 바 있는 현재의 “표준화 보고 지침(standardized reporting directive)” 91/692/EC⁵⁾의 개정이다. 이 개정은 불필요한 보고요건들을 폐지하여, 보고체계를 단순화, 현대화한 것이다. 2012년까지의 각 회원국들의 환경정보공유 상황이 정리되는 대로 2013년 이후에는 새롭고 구체적인 환경정보공유제도의 모습을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이는 2012년 11월 26부터 12월 7일까지 진행되는 UN기후변화협약(UNFCCC)당사국총회에서도 주요 의제로서 영향을 미치게 된다.

- ① 일관성과 최신정보에 대한 전체운곽을 제공하여 주제별 환경입법화를 위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할 것이다.
- ② 국제회의들에서도 유사한 진척을 유도할 것이다. 추산에 따르면, 국제회의들은 EU 회원국들이 해야 하는 환경보고의 약 70%를 감당하고 있다.
- ③ 회원국 간의 자료 수집과 교환을 보다 조직화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⁶⁾

IV. 환경정보공유제도의 원칙

이 EU집행위원회의 통보는 ① 지방단체, 지역단체, 국가 및 EU 차원에서 수집된 자료의 존재가 ‘폭넓게 인지’되지 못하여 그 방대한 양의 정보가 알려지지 않아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② 법적, 경제적, 기술적, 절차적 장애물로 인해 그 수집된 자

4) COM(2008) 46 final, p.2.

5) Council Directive 91/692/EEC of 23 December 1991 standardizing and rationalizing reports on the implementation of certain Directives relating to the environment. (OJ 31.12.1991 L377/48~54). 이는 European Parliament and Council Regulation 1882/2003/EC (OJ 31.10.2003 L284/1)에 의해 부분 개정되었고, 현재는 본 통보에 의해 재개정 움직임이 있다.

6) COM(2008) 46 final, p.2.



료의 '활용이 항상 비효율적'임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이 통보에서 제시되는 원칙들은 수 년간에 걸친 연구와 전문가들의 심사숙고를 거쳐 제시된 것들이며, 이로 인해 환경에 관한 정보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체계화되고, 특히 정보수집 '과정'과 '감시'에 사용되는 투자액이 결과적으로 최대의 효율을 낳도록 하기 위해 제시되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환경정보공유제도(SEIS)의 확립을 위해 다음과 같은 원칙들을 제시한다. 이 원칙들은 효율적인 환경정보의 사용과 감시, 수집을 최대화하기 위한 원칙들이다.

- ① 정보는 가능한 한 그 출처와 '근접'해서, 즉 가능한 한 출처에 가깝게 존재하여 다루어져야 한다.
- ② 정보는 1회 수집되며, 여러 목적을 위해 다른 이들과 '공유'되어야 한다.
- ③ 정보는 공공단체(공공기관)들이 즉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용이'해야 하며, 이들 단체가 해야 하는 법적 보고의무를 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 줄 내용'이어야 한다.
- ④ 정보는 환경상태와 정책효율성을 신속하게 '평가'하고 새로운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 공동단체들이나 EU 공공단체들의 모든 실수요자의 쉬운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
- ⑤ 정보는 지리적으로(예컨대 농어촌(coun-

tries), 도시(cities), 집수역[集水域](catchment areas, 일정한 권역) 등) '비교' 가능하도록, 그리고 환경정책의 개발과 이행에 '참여'하도록 공공단체와 시민 모든 실수요자의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

- ⑥ 정보는 내용의 '기밀' 사항(기밀성)을 고려하되, 관련 국가들의 '언어'로 일반 '대중'에게 모두 공개하여 충분히 이용 가능해야 한다.
- ⑦ 정보의 공유(sharing)와 처리(processing)는 공동 및 무료 공개 자료의 소프트웨어로 유지되어야 한다.⁷⁾

V. 환경정보공유제도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예시적 검토

EU가 유럽환경청(European Environment Agency, EEA)의 웹사이트(즉 Ozone Web 또는 오존웹 프로젝트)를 이용해 오존수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 사례는 유럽의 환경정보공유제도(SEIS) 실현의 긍정적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2006년 22개국은 유럽환경청(EEA)에 정기적으로 실시간 오존수치를 제공한 가운데 다른 5개국이 웹 설치에 참여했던 Ozone Web은 유럽환경청 웹사이트에 시험결과를 게재하였다. 또한 데이터 제공은 점차적으로 증가해 그 해 여름이 끝날 때에는 같은 해 유럽 전역의 약

7) COM(2008) 46 final, pp.2~3.

700개 관측소가 실시간으로 오존수치 자료를 웹사이트에 제공하였다. 이 사이트는 시민, 정보제공자, 기후 전문가들에게 대기 상태를 알 수 있도록 하여 특정지역의 대기질의 변화를 제공하였다. 동시에 국가 또는 지역 오존 웹사이트와 연계하여 지역 정보와 EU 전체 상황을 일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의 한계를 초월하는 대기질의 상태비교를 가능케 하였다. 유럽환경청 웹사이트는 일반대중에게 실시간 유럽 전역의 오존 수치를 지도 상으로 표현해 알려주며 대기 상태에 대한 더 많은 참고자료들을 제공한다.

이러한 유럽환경청 오존웹은 최근의 정보, 즉 2 시간 이내의 오존수치를 지도 인터페이스에 게재하여 공기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였다. 만약 이 환경정보체계가 전체 EU 지역을 포괄하게 되면 EU집행원회 제출용 보고서를 위한 ‘한 여름의 오존수치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유럽환경청은 오존웹을 다른 오염물질로도 확대할 계획인데, 이것이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EU 모든 회원국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완성된 제도는 시민들에게는 정보를, 연구자들에게는 데이터를, 유럽환경청에는 환경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며, EU집행위원회에게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⁸⁾

이러한 오존웹은 ‘공개’되어 ‘공유’된 환경정보체계가 제공하는 생활서비스의 한 예로서,

EU가 도입하고 있는 환경정보공유제도의 의도에 부합한다. 그러나 오존웹은 단일 오염인자에게만 국한되어 있으므로, 이를 새로운 도전에 대처하고 통합된 분석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오존만이 아닌 보다 폭넓은 오염인자를 포함하는 환경정보들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오존웹은 EU의 환경정보공유제도의 구축을 위한 하나의 증거자료에 해당하는 실제적인 예로서 제공될 수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한 면이 없지 않다. 따라서 ① 공유가 가능한 ‘개방형 환경정보제도’의 온전하고도 충분한 실행을 위해서, 그리고 ② 21세기 제기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서는 오존웹과 같은 접근방식을 보다 ‘활성화’시켜 보다 ‘포괄적인’ 환경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VI. 환경정보공유제도 실현을 위한 토대 조건

1. 비용

환경정보공유제도의 비용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미 연관된 작업들이 진행 중이라는 점이다. 즉 막대한 초기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작업들의 효과적 조정 및 조율을 위하여 EU차원에서 후술

8) COM(2008) 46 final, p.4.

될 여러 주요 프로젝트들이 함께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환경정보공유제도의 원칙들의 완전한 실행을 위해서는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다. 이는 특히 2009년 코펜하겐 UNFCCC 당사국 총회 이후에 유럽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이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기술하고자 한다.

- ④ INSPIRE (Infrastructure for Spatial Information) 지침을 계속 실행하기 위해 각 국가별 그리고 EU 차원에서의 더 많은 정치적, 행정적 관심과 적절한 자금조달이 필요하다.
- ⑤ 환경자료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행정기관이나 단체들은 현 체계를 공동으로 활용하고, 또한 통합총괄시스템에 연결되도록 현 체계의 구조와 사업방식을 재검토하거나 수정할 필요가 있다.
- ⑥ EU에 속한 기관이나 단체들은 대체로 중앙집중 방식의 현 보고체계를 분산된 네트워크의 공동운용(상호 운용가능한 분리된 네트워크)이 가능하도록 변경하는 동시에, 입법에 필요한 요구조건들을 최신화하고 합리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⑦ 투자는 불필요한 정책의 폐기와 자료의 우선순위결정으로 상쇄되기도 하지만, 정책적 필요성, 감시활동 및 자료체계의 조

화에 필요한 새로운 추가적 자료수집을 위해서도 필요하다.⁹⁾

2. 실행을 위한 조건

환경정보공유제도(SEIS)의 실행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위에서 언급한 환경정보공유제도 실행의 '원칙'에 대한 정치적 약속이다. 이러한 전폭적인 지지가 가능한 경우에만, 다양한 개별적 목적들을 달성하는 통합된 기획이 가능하도록 '통로' 역할을 해 주는 관련자들이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기 때문이다. 즉 이 제도는 정부 안팎에 있는 많은 실행자들의 노력이 각기 다른 '목적'을 갖고 접근하게 되지만, 결국에는 하나의 통합된 프로젝트임을 인식시켜 주기 때문이다. 이로써 이들의 지속적인 노력들이 '분산'되어 환경정보공유제도의 실행과 관련된 도전 과제들을 해결하는데 비효율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적절한 국가 정보 통합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회원국들의 일관성 있는 행동도 필요하다. 결국 환경정보공유제도 실행상의 원칙들에 대한 정치적 약속이 전제되어야 정부 내외의 많은 사람들에게 '명백한 신호'를 알릴 수 있고, 계속 진행되고 있는 활동들의 '위험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치적 약속은 환경정보공유제도의 온전한 실행에 있

9) COM(2008) 46 final, p.6.

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요청되는 전제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유럽 전역에서 행해지는 다양한 활동과 환경정보공유제도 간의 긴밀한 협조 관계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각 국가적, 지역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각각의 환경활동들은 환경정보공유제도와 긴밀하게 조정됨으로써 재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EU집행위원회는 ① 2009년 5월 15일, 늦어도 2012년 5월 15일까지 INSPIRE¹⁰⁾지침의 실행을 촉구하였고, ② GMES(European Earth monitoring programme)¹¹⁾ 규칙을 2010년 제안하여 2011년부터 2013년까지를 초기 운영기간으로 설정하고 지구의 환경 등을 모니터하고 있다. 이 두 활동들의 성공적 운영을 통하여 SEIS, INSPIRE, GMES는 서로 상호보완(또는 상호지원)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조치로 유럽 내에서 모두가 환경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고, 또한 공공정책 입안자들과 시민들에게 환경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 두 가지 활동들의 성공여부는 신중히 평가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될 것이다.¹²⁾

그리고 환경정보공유제도의 실행에 있어서

중요한 간소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환경입안을 위한 정보이용과 관련된 법조항들을 현대화하는 것이다. 시대에 적합하며 또한 환경정보공유제도의 원칙과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 '표준보고 지침(Standardized Reporting directive)' 91/692/EC의 개정이 필요하므로 현재의 낡은 조항을 삭제하고 환경정보공유제도의 원칙과 목적들을 법적 의무사항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환경정보공유제도의 원칙들이 현재의 보고 및 감시조항들과 가능한 한 통합되도록 입법화 과정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즉 SEIS의 목적과 원칙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새로운 지침이 채택될 수 있다. 제안되는 새로운 지침들은 이 통보상의 SEIS의 원칙과 목표를 기반으로 하여 제시되어야 할 것이고, 현재 그 개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또한 EU집행위원회는 환경정보공유제도 실행의 원칙들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주제별 환경입법에 필요한 정보내용을 효율화할 것이다. 더 많은 환경정책이 필요한 만큼 GMES의 많은 통계적 자료가 필요할 것이다. 주제별 환경정책과 GMES의 작업에 대한 심층적 분석은 실제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명확히 하여 필요한 법적 또는 재정적 수

10) Directive 2007/2/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March 2007 establishing an Infrastructure for Spatial Information in the European Community (INSPIRE). (OJ 15.5.2007 L108/1~14). EU는 조화로운 우주와 환경의 정보를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INSPIRE를 확립했고 이 정보는 on-line으로 이용할 수 있다.

11) EU집행위원회와 EU우주국의 공동기획으로서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지구 관찰 능력을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Regulation 911/201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September 2010 on the European Earth monitoring programme (GMES) and its initial operations (2011-2013). (OJ 20.10.2010 L276/1~10).

12) COM(2008) 46 final, p.9.

단을 강구하기 위해 필요하다. 또한 EU 집행위원회는 이와 유사한 국제적 노력들이 진행됨에 있어서 그러한 국제적 의무조항의 간소화를 위해 관련 국제회의에도 참여하여 환경정보공유에 대한 적극적인 견해를 피력할 것이다. 이 경우 EU 회원국들은 국제적 차원에서의 환경정보수집 절차의 간소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EU 집행위원회를 지지할 수 있고 지지해야 할 것이다.¹³⁾

유럽환경정보관찰네트워크를 위해 2009년부터 그 역할이 강화된 유럽환경청(EEA)¹⁴⁾은 환경정보공유제도(SEIS)의 실행을 위한 중추적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이 제도와 관련되어 앞서 언급된 원칙들을 제시하고 지지하여 왔다. EEA는 신속(시의 적절)하고 신뢰성 있는 환경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정보공유제도를

‘전략의 중심’에 두어 잘 활용해야 한다. 따라서 회원국들은 유럽환경청의 Reportnet을 충실히 사용할 필요가 있으며, 최근에 배포된 유럽시스템과 호환 가능하도록 점진적인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EEA는 계속해서 시기적절하고 신뢰할 만한 환경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SEIS를 핵심전략으로 사용해야 한다. EU 집행위원회는 우선적으로는 EU내 회원국들을 중심으로 SEIS를 발전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SEIS의 실행을 위한 원칙들은 제3국들과의 관계에서도 홍보되어야 하고, 장차 ‘전 지구적 차원’의 협력과 공조가 필요하다.

또한 필요한 기반시설을 위한 자금 확충을 위해 최근까지 EU 집행위원회의 재정 지원(Community financial support)이 Research Framework Programmes,¹⁵⁾ LIFE+,¹⁶⁾ Competitiveness and Innovation framework

13) COM(2008) 46 final, p.9.

14) Regulation 401/200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April 2009 on the European Environment Agency and the European Environment Information and Observation Network (OJ 10.6.2009 L126/13~22).

15) Decision 1982/200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8 December 2006 concerning the Seventh Framework Programme of the European Community for research,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demonstration activities (2007-13), and Council Decision 969/2006/EC of 18 December 2006 concerning the Seventh Framework Programme of the 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 (Euratom) or nuclear research and training activities (2007-11).

16) The LIFE+ programme은 환경에 관련된 정책과 법률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데 기여하는 프로젝트에 재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환경 관련 문제를 다른 정책과 통합시키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 The LIFE+ programme은 환경 정책을 위해 그 전에 사용되었던, the LIFE programme과 같은 많은 재정지원 수단을 대체하고 있다. Regulation 614/200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May 2007 concerning the Financial Instrument for the Environment (LIFE+);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of 30 September 2010 - Mid-term review of the LIFE+ Regulation [COM(2010) 516 final].

Programme(CIP)¹⁷⁾의 목적과 필요성에 따라 적절히 할당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SEIS의 성공 여부는 필요한 활동과 목적을 위해 국가적으로 그리고 지방적으로 적절한 재정을 지원하는데 달려 있다.¹⁸⁾

그리고 정보이용의 가능성 개선과 비용대비 효율성은 ① 현존 감시체계들 간의 조정과 ② 회원국들의 감시체계 계획과 실행 사이의 상반된 주제 사이의 조정이 이루어질 때만 가능하다. 또한 위에서 제시된 환경정보공유제도의 원칙들은 특히 가입신청국, 인접국, 그리고 제3국에도 권장됨으로써 환경정보공유제도가 이들 국가들에게도 개방될 것이다.¹⁹⁾ 이들 국가들에게도 SEIS를 개방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점에서 이는 국제적으로도 매우 의미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환경문제가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과제이며, 또한 초국경적인 사안으로서 국제적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할 인류 공동의 과제임을 보여준다.

위와 같은 맥락에서 EU집행위원회는 향후 필요한 경우 적절한 법률을 지속적으로 제안할 것이고, 어떠한 법안이 가장 필요한지의 개요보고서를 3년에 한 번씩 발행할 계획을 세우

고 있다.

Ⅶ. 환경정보공유제도 실행의 기대효과

환경정보공유제도 실행의 이점은 정보의 개방과 통합이라는 이 제도의 목적과 맥을 같이 한다. 환경정보공유제도를 통한 환경관련 정보의 공유는 결국 유럽사회 전체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것이고, 그 구체적인 이점은 다음과 같다.

1. 정보이용절차의 단순화와 효율성 제고

환경정보공유제도의 핵심은 EU의 환경입법에 필요한 정보이용을 위해 관련 법률 조항들을 현대화하는 것이다. 서류보고를 폐지함으로써 정보이용 절차는 더욱 ‘간소화’되고 유연해지며 ‘효율적’이 된다. 그리고 환경정보공유제도의 원칙들에 대한 정치적 약속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주제별 환경입법을 위한 정보 내용면에서, 국제적 수준의 보고 내용과 절차면에서, 그리고 회원국들 간의 자료수집 활동의 효율적 조직면에서 한층 더 ‘간소화’될 것이다. 이처럼

17) Lisbon strategy를 새롭게 해서 유럽의 성장과 고용을 자극할 목적으로 2007~2013년에 채택된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EU의 경쟁력과 혁신력을 강화시키는 여러 조치들을 지원하며, 특히 정보 기술, 환경 기술 그리고 재생 에너지 자원의 이용을 장려한다. Decision 1639/200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4 October 2006 establishing a Competitiveness and Innovation Framework Programme(2007-2013).

18) COM(2008) 46 final, p.10.

19) COM(2008) 46 final, p.10.

럼 환경관련 자료의 보다 더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환경정보공유제도는 현재 보다 더 주제별 환경입법에 필요한 정보의 우선순위결정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한다. 또한 여러 국가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보고 의무'에 관한 국제조약과 관련하여 부수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비용의 측면에서 볼 때 회원국들 간에 데이터 수집활동을 효과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상당한 규모의 비용절감이 예상된다. 이 같은 '효율적 단순화'는 ① 자료수집활동을 개선하고, ② 국가적·지역적 감시활동의 조화와 ③ 우선순위결정에 있어 상당한 비용절감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²⁰⁾

2. 보다 나은 환경규제, 즉 보다 나은 환경정책의 입안과 실행의 가능

EU의 환경정보체계의 단순화의 목적은 보다 나은 환경규제 - 즉 더 좋은 환경정책 - 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데는 관련성이 있는 정보이면서 시의적절한 성질을 갖는 '양질의 정보'에 달려 있다. 그런데 환경정보공유(SEIS)가 이것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간소화로 인한 행정적 부담의 감소를 통해 공공정책과 규제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고 향상시켜야 한다.

이를 위한 정치적 약속 또한 추가적 요건이다. 환경정보공유제도의 원칙들에 대한 정치적 약속은 이용 가능한 환경 정보 및 자료들을 효과적으로 관리 및 통제함으로써 보다 나은 환경규제 또는 환경정책을 가능케 한다. 또한 환경자료와 정보의 '잠재적 유용성' 때문에 자료수집, 교환 및 사용을 위한 메커니즘이 발전할 것이며, 동시에 사용자에게는 비용절감의 효과까지 제공하게 될 것이다. 결국 환경관련 정보와 데이터는 여러 목적을 위해 잠재적으로 사용될 것으로써, 이러한 정보의 교환과 이용은 이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에게는 정보수집과 이용상의 비용절감효과를 가져다줄 것이며, 미래에는 환경관련 정보의 사용이 효과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기후변화, 생명다양성 보호, 수자원관리, 홍수, 산불과 같은 환경위기의 관리와 예방 등 모든 의제에 걸쳐 환경정책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줄 것이다.²¹⁾

3. EU시민에 대한 일정한 권한 부여

위에서 언급한 환경정보공유제도의 원칙들의 이행은 이와 같은 행정절차의 간소화와 더 나은 정책과 규제 외에도 EU 시민들(citizens)에게 그들과 관련된 사용가능한 '적절한 환경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에게 '긴급 상황'에 대처하는 것을 포함하여 환경과 관련하

20) COM(2008) 46 final, pp.4~5.

21) COM(2008) 46 final, p.5.

여 보다 나은 환경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의 '참여'의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환경정보를 통해 비상사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또한 공공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등 시민들의 참여가 가능해진다. 이와 같은 환경정보공유 과정을 통해 결국 EU의 여러 환경의 제들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와 개입이 가능하게 한다. 나아가 일반 대중이 필요로 하는 알기 쉬운 언어로 기술된 유용한 정보는 EU차원의 여러 프로젝트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것이다.²²⁾

Ⅷ. 결 언

유럽이라고 하는 지역은 본질적으로 국가 간 종교적, 문화적, 경제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오랜 역사 동안 헬레니즘, 카톨릭, 기독교, 르네상스, 산업혁명, 세계대전이라는 역사적인 사건들 속에서 동질감을 확보하고 있다. 현재 유럽은 EU 통합을 통하여 그들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들을 진행하고 있으며, 환경정책도 그 핵심정책 분야의 하나이다.

오늘날 환경문제는 초국경적인 글로벌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전 세계 국가들이 나서서 통합적, 조직적으로 규범력 있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세계 각 국가의 이해관계에 따른 환경문제 해결의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전 세계가 초국가적 환경문제 해결기구를 설립하지 않는 한, 이는 매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가운데 가장 모범적인 환경문제 관련 합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회원국들의 이익 및 이해가 서로 부합하고 있는 EU의 환경정책이라고 보여진다. EU는 이미 유럽환경청(EEA)과 같은 공동의 기관을 설립하여 환경문제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으며, 환경문제의 해결 방식에 대한 논의도 다른 국가 및 지역체보다도 앞서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EU가 27개 국가로 구성된 연합체라는 점에서 통합공동체하에서의 이상적인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 EU가 통합공동체라고는 하지만 회원국들이 아직도 고유의 주권국가로서 이해관계라든지, 언어라든지, 해결 방식의 태도라든지, 처방책이 국가별로 상이할 수 있어 자국의 고유의 체계를 고수하기를 선호할 수 있다. 이는 현재도 환경문제에 있어 EU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환경정보 수집 및 이용에 있어서 통일적인 환경정보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며, 바로 언어적, 정치적 장벽을 뛰어 넘는 결과물로서의 환경정보공유제도로 총칭할 수 있을 것이다. EU는 이미 환경정보 수집을 하는 하부조직(국가 및 소속 기관들), 그리고 이를 활용할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는 상태이며, 환경정보공유제도는 단지 이미 설립되어 있는 프로세

22) COM(2008) 46 final, p.5.



스를 보다 '개선'시키기 위한 시스템이며, 이는 EU가 환경문제를 인식하고 대처하는 역량이 이미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기획 및 실행 초기 단계를 넘어서 개선의 단계로 접어든 EU의 행보를 보면 EU라는 지역통합체제가 유럽 환경입법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진전시켜 왔는지 짐작할 수 있다. 오늘날 환경문제는 초국경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임에 틀림이 없고, 국제사회에서 각 국가는 국제적 차원에서 환경문제의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처럼 각 국가

가 다양한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EU가 환경정보공유제도(SEIS)의 구축을 향해 이미 그 해답에 대한 접근방식을 찾고 실행에 옮기고 있다는 사실은 환경정보관리체계에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게도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김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사)

참고문헌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Council, the European Parliament,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of 23 January 2008 entitled "Towards a Shared Environmental Information System (SEIS)". COM(2008) 46 final(OJ 2008 C 118).

Council Directive 91/692/EEC of 23 December 1991 standardizing and rationalizing reports on the implementation of certain Directives relating to the environment. (OJ 31.12.1991 L377/48~54).

Directive 2007/2/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March 2007 establishing an Infrastructure for Spatial Information in the European Community (INSPIRE). (OJ 15.5.2007 L108/1~14).

Regulation 911/201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September 2010 on the European Earth monitoring programme (GMES) and its initial operations (2011-2013). (OJ 20.10.2010 L276/1~10).

Regulation 401/200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April 2009 on the European Environment Agency and the European Envi-

ronment Information and Observation Network. (OJ 10.6.2009 L126/13~22).

Decision 1982/200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8 December 2006 concerning the Seventh Framework Programme of the European Community for research,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demonstration activities (2007-13).

Council Decision 969/2006/EC of 18 December 2006 concerning the Seventh Framework Programme of the 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 (Euratom) or nuclear research and training activities (2007-11).

Regulation 614/200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May 2007 concerning the Financial Instrument for the Environment (LIFE+).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of 30 September 2010 - Mid-term review of the LIFE+ Regulation [COM(2010) 516 final].

Decision 1639/200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4 October 2006 establishing a Competitiveness and Innovation Framework Programme(2007-2013)